

제13회 정기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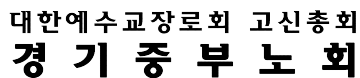
주제: “열심을 품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노회”
(롬 12:11, 엡 2:20~22)



일시: 2023년 10월 9일(월) 오후 7시 ~ 10(화) 오후 5시

장소: 안양신일교회당(신주실 목사 사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93



제 목: 제13회 정기노회 소집의 건

- 아 래 -

- ۲۲ -

경기중부노회 노회장 이영근 목사
서 기 김성은 목사



시 행 문서번호/제12-13호 시행일자/2023년 9월 15일 접수일자/
담당자 서기 김성은 목사 전 화 070-8682-4017 Fax 0508-912-4018
주 소 (15880) 경기도 군포시 변영로28번길 45-57 이메일: letamsjh@gmail.com

1. 목차

1. 목 차	5
2. 순 서	6
3. 개인명부	8
4. 교회별명부	10
5. 상비부	12
6. 상정안(案)	14
7. 보 고	16
8. 2022년-2023년 결산	22
9. 임원회 결의사항	25
10. 광 고	27
11. 모임장소 안내	28
12. 경기중부노회 규칙 개정안	29
13. 경기중부노회 규칙	32
14. 시행세칙	41
15. 별첨1(담임목사명부)	47
16. 별첨2(은퇴/원로목사 주소)	49
17. 임원 명단	50

2. 순서 (10/9 오후 7시 - 10/10 오후 5시)

10월 9일(월)

개회예배 (오후 7:00 - 7:50)

인도 : 이영근 노회장

목	상	기	도	-----	다	같	이
찬		송	-----1장	-----	다	같	이
기		도	-----	-----	부노회장	김종철장로	
찬		양	-----	-----	안양신일교회	찬양대	
성	경	봉	독	-----	롬 12:11, 엡 2:20~22	-----	부서기 임은택목사
설		교	-----	“열심을 품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노회”	-----	부노회장	김석률목사
찬		송	-----220장	-----	다	같	이
축		도	-----	-----	노회장	이영근목사	

회무처리 (오후 8:00 - 9:30)

회	원	호	명	-----	서		기
개	회	선	언	-----	노	회	장
절	차	보	고	-----	서		기
신	입	회	원	인	사	-----	노 회 장
임	원	선	거	-----	다	같	이
신	, 구	임	원	인	사	-----	신 , 구 임 원
상	정	안	보	고	-----	서	기
정		회	-----	(익일 오전 9시 30분까지)	-----	노	회 장

10월 10일(화)

계속 회무처리 (오전 9:30 - 11:30)

회	원	호	명	-----	서		기
상	비	부	조	직	-----	각	부 서 별
각	부	보	고	및	청원	-----	각 부 서 기
시	찰	회	조	직	-----	각	시 찰 별
시	찰	조직	및	상황보고	-----	시 찰	서 기
상	정	안	건	처	리	-----	다 같 이
정		회	-----	-----	노	회	장

경건회 (오전 11:40 - 12:30)

인도 : 신임 노회장, 설교 : 신원하 목사(신대원교수)

목	상	기	도	-----	다	같	이
찬			송	----- 210장 -----	다	같	이
기			도	-----	신	임	장
성	경	봉	독	-----히브리서 3 : 7 ~ 19 -----	설	교	자
설			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전하는 사역자-----	설	교	자
찬			송	----- 198 장 -----	다	같	이
축			도	-----	신	임	목
					사	부	노
							회
							장

* 중식 (12:30 - 오후 2:00)

계속 회무처리 (오후 2:00 - 4:30)

유안건처리 및 기타토의	-----	다	같	이
73회 총대보고	-----	총	대	대
감사보고	-----	감	사	부
결산보고 및 예산안처리	-----	다	같	이
당회록검사보고	-----	행	정	법
내회장소결정	-----	다	같	이
회의록채택	-----	다	같	이

폐회에배 (오후 4:40 - 5:00)

사 회 ,	설 교	-----	노	회	장
-------	-----	-------	---	---	---

3. 개인명부

1) 목사회원 (128명)

(1) 담임목사 (58)

정권준 김홍석 이영근 전종철 박성덕 김성규 김동식 조원근 정균호 박승하
이준성 김실구 강대수 박흥대 이동준 김수구 박충성 김광섭 한금석 이성열
장정복 이근행 김석률 김의겸 방석진 송재홍 신동섭 김성은 이성일 임재호
임은택 강태원 정성구 김생중 김세용 진경신 최경훈 이수영 임경호 정철기
정성훈 최경선 이종문 박성산 최민호 김정남 한성훈 안영기 송태성 정중현
이명진 김영규 우선동 신주실 이성구 김경수 이영범 유대식

(2) 부목사 (21)

이영호 강성호 김동혁 정종구 장세영 최승리 오인우 이장우 김원배 윤진석
심성현 신상훈 장신규 이원섭 김창기 이세훈 김태균 홍태화 이옥찬 이재성
이현규

(3) 기관. 종군. 전도목사 (6)

신원하 최정기 허태수 유모세 국중근 김훈연

(4) 원로. 은퇴목사 (18)

최병학 정강화 윤우영 오순동 임인혁 김상수 이광현 이상기 김정삼 박승용
김용출 강연형 강호산 윤광중 천재석 박성영 정진철 추경호

(5) 무임목사 (10), 유학 (1)

곽대영 박진현 박창현 윤승곤 이병철 지완훈 최원재 황성수 박요섭 전영태
* 이은표(유학)

(6) 선교사 (14)

임성용 박종덕 김선식 신사범 송호완 현 준 최원근 정양오 성충경 은희봉
양창모 박현감 신동호 윤진실

(7) 준회원 (3)

최승혁 김일화 백병주

2) 장로총대 (49명)

김인수 김기선 김승철 손경모 이정백 임학모 권석희 윤운섭 권혁수(일심)
박성열 박종배 유철선 이홍섭 신오범 김성이 정연배 홍주희 고동영 이금하
이강열 김석희 김기준 임완수 김창희 이명호 김무겸 권혁수(광교) 정현성
김춘호 장경식 김장식 박갑봉 방성철 양동일 김용림 장현록 최운환 박성하
김종철 허창범 정보영 박성용 안창환 송영선 조남창 정연철 박순호 백종규
김영훈

4. 교회별 명부(시찰별 교회 가나다순)

시찰	교회	목사	부목사	장로
동부 (10)	갈뚝교회	김경수		김인수
	광명일심교회	정철기		
	광천교회	신동섭		김기선
	말씀전원교회	방석진		김승철
	새빛교회	정군호		
	석천교회	정성구		손경모
	안양일심교회	김홍석	이영호 강성호 김동혁 정종구 장세영 최승리	이정백 임학모 권석희 윤운섭 박성열 박종배 권혁수
	옥길교회	임재호	오인우	유철선 이홍섭
	평촌우리교회	이종문		
	한마음교회	이성구		신오범
서부 (12)	가온빛교회	최경선		김성이
	꿈꾸는교회	이영범		
	드림교회	박승하		
	솔빛교회	정성훈		정연배
	시흥성문교회	이근행		홍주희
	양문교회	전종철	이장우 김원배	고동영 이금하
	예수소망교회			
	온천하교회	김생중		
	은혜의교회	김정남		
	천성교회	우선동		이강열
	큰숲교회	이준성		
	해오름교회	임경호		
중부 (11)	늘빛교회	정권준		
	늘푸른교회	장정복		
	생수교회	조원근	윤진석	김석희 김기준
	신명교회	김영규		
	영신교회	박흥대		
	예담교회	송태성		
	우리교회	박성덕		
	육도교회			
	은성교회	유대식		임완수
	천산교회	김수구		김창희
	하은교회	이동준		이명호
남부 (14)	광교장로교회	정중현	심성현 신상훈	김무겸 권혁수 정현성
	기쁨의교회	안영기		
	넉넉한교회	강태원		
	만나교회	이성열		
	살림교회	한성훈		

	새수원제일교회	이성일		김춘호
	늘사랑교회	이수영		
	성현교회	강대수		
	수원민음의교회	한금석		장경식
	수원사명교회	이명진		
	수원시민교회	김성규	장신규	박갑봉 김장식
	수원은혜교회	김광섭		
	아름다운교회	김의겸		
	행복한교회	박성산		
북부 (13)	군포성안교회	임은택		방성철
	군포시민교회	김성은		양동일
	들꽃교회	송재홍	이원섭	김용림 장현록
	새언약교회	최민호		
	성광교회	김실구		최윤희
	신안교회	최경훈		
	신일교회	신주실	이세훈 김태균 홍태화 김창기 이옥찬	박성하 김종철 허창범 정보영 박성용 안창환
	영천교회	박충성		
	은혜신일교회	진경신	이재성	송영선
	일심비전교회	이영근		조남창
	좋은시민교회	김세용		정연철
	창대한교회	김석률		박순호
	충훈교회	김동식	이현규	백종규 김영훈
	• 기관목사: 신원하 최정기 허태수 • 종군목사: 유모세 • 전도목사: 국종근 김훈연 • 무임목사: 곽대영 박진현 박창현 윤승곤 이병철 지완훈 최원재 황성수 박요섭 전영태 • 유학목사: 이은표 • 선교사: (KPM) 김선식 박종덕 박현감 송호완 신사범 임성용 윤진실 (교회) 성충경 신동호 양창모 은희봉 정양오 최원곤 현 준 • 은퇴목사: 최병학 정강화 윤우영 오순동 임인혁 김상수 이광현 이상기 김정삼 박승용 김용출 강연형 강호산 윤광중 천재석 박성영 정진철 추경호 • 준회원: 최승혁 김일화 백병주			

담임목사	58명	무임, 유학목사	11명
부목사	21명	원로, 은퇴목사	18명
기관, 종군, 전도목사	6명	준회원	3명
선교사	14명	장로	49명
합계	180명		

5. 상비부

규칙 제 3조

8. 장로 총대가 교체되었을 경우 이미 해 교회에 배정된 각 상비부에서 상호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상비부장은 가급적 1년조에서 선임하고, 서기는 2년조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각 상비부장 및 서기는 담임목사로 한다.
 - * 1년조 맨 앞에 기록된 회원은 서기부에 상정된 서류를 받은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 * 조직보고와 예산청원은 서로 다른 보고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1) 임사부

부 장: **목사 / 서 기:** **목사**

3년조: 강대수 이근행 방석진

2년조: 김성규 이성일 신동섭

1년조: 김동식 김수구 이동준

2) 행정법규부

부 장: **목사 / 서 기:** **목사 / 회 계:** **장로**

3년조: 목사) 정권준 강태원 최민호

장로) 김기준 최윤희 송영선 박순호

2년조: 목사) 전종철 국중근 김광섭 신상훈

장로) 윤운섭 김춘호 정연배

1년조: 목사) 조원근 김의겸 강성호 이세훈

장로) 김승철 박종배 안정환

3) 선교부

부 장: **목사 / 서 기:** **목사 / 회 계:** **장로**

3년조: 목사) 임은택 정중현 이현규 김훈연

장로) 권혁수(일심) 손경모 조남창 이흥섭

2년조: 목사) 이종문 최경선 김정남 윤진석 이원섭

장로) 이명호 김기선 장경식

1년조: 목사) 박충성 이수영 최경훈 이장우 이옥찬

장로) 박종배 박갑봉 이정백

4) 사회복지부

부 장: **목사 / 서 기:** **목사 / 회 계:** **장로**

3년조: 목사) 정군호 정성훈 이명진 김윤수 이영호
 장로) 권석희 김성이 장현록 권혁수(광고)
 2년조: 목사) 임경호 장정복 최정기 권혁민
 장로) 김영훈 임학모 이삼권
 1년조: 목사) 이근행 김생중 박성산 심성현 김동혁
 장로) 김무겸 박성열 홍주희 정연철

5) 교육부

부 장: **목사 / 서 기:** **목사 / 회 계:** **장로**

3년조: 목사) 신주실 김경수 유대식 장신규 오인우
 장로) 김석희 백종규 유철선
 2년조: 목사) 정성구 한성훈 김태균 최승리 이재성
 장로) 김인수 신오범 임완수
 1년조: 목사) 진경신 김영규 송태성 이영범 장세영
 장로) 이금하 김종철 정현성

6) 신학부

부 장: **목사 / 서 기:** **목사**

3년조: 김홍석 우선동 김성은
 2년조: 이영근 한금석 송재홍
 1년조: 신원하 김실구 이성열

7) 전도부

부 장: **목사 / 서 기:** **목사 / 회 계:** **장로**

3년조: 목사) 박승하 임재호 이성구 정종구 홍태화
 장로) 고동영 박성하 김장식
 2년조: 목사) 박흥대 박성덕 정철기 김원배
 장로) 방성철 양동일 김용림
 1년조: 목사) 김세용 안영기 김창기 유모세
 장로) 정보영 이강열 박성용

8) 재무부

부 장: **목사 / 서 기:** **목사 / 회 계:** **장로**

3년조: 목사) 이영근
 장로) 권석희 이금하
2년조: 목사) 김석률
 장로) 허창범 박문수
1년조: 목사) 이준성
 장로) 유철선 임학모

※ S.F.C.지도위원회

위 원 장: **목사 / 서 기:** **목사 / 회 계:** **장로**

위 원: 목사) 송재홍 정성훈 정철기 유대식 정중현
 장로) 윤운섭 박갑봉

※ 은퇴관리 위원회

위 원 장: **목사 / 서 기:** **목사 / 회 계:** **장로**

위 원: 목사) 이준성 이동준 김석률 방석진 이성일
 장로) 김인수 이정백 김종철 신오범

6. 상정안(案)

1) 인사부로 보낼 안건

- (1) 인천노회장 김도태목사가 송부한 신상훈목사의 초원교회 위임목사 청빙 조회의 건
- (2) 광교장로교회 당회장 정중현목사가 청원한 심성현목사의 전도목사 파송의 건
- (3) 영신교회 당회장 이동준목사가 청원한 박흥대목사 은퇴의 건

2) 행정·법규부로 보낼 안건

- (1) 예수소망교회 당회장 우선동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폐쇄 허락의 건

- (2) 말씀전원교회 당회장 방석진목사가 청원한 장로 김흥석씨 1명 지명선택 청원의 건
- (3) 광명일심교회 당회장 신동섭목사가 청원한 교회주소 변경청원의 건
- (4) 시흥성문교회 당회장 이근행목사가 청원한 강선모, 양선준, 허강수씨의 장로피택 보고의 건
- (5) 솔빛교회 당회장 정성훈목사가 청원한 안동진씨의 장로피택 보고의 건
- (6) 가온빛교회 당회장 최경선목사가 청원한 최현석씨의 장로피택 보고의 건
- (7) 들꽃교회 당회장 송재홍목사가 청원한 당회조직 보고의 건
- (8) 신안교회 당회장 최경훈목사가 청원한 안수집사, 권사 선택을 위한 협조당회 청원의 건
- (9) 성광교회 당회장 김실구목사가 청원한 이의수, 유인종씨의 장로피택 보고의 건
- (10) 일심비전교회 당회장 이영근목사가 청원한 장로 3인 증원 청원의 건
- (11) 군포시민교회 당회장 김성은목사가 청원한 당회조직 보고의 건
- (12) 좋은시민교회 당회장 김세용목사가 청원한 당회조직 보고의 건

3) 전도부로 보낼 안건

- (1) 광교장로교회 당회장 정중현목사가 청원한 교회개척 허락의 건
- (2) 동부시찰장 방석진목사가 청원한 시찰 내 미래자립교회 재정청원의 건
- (3) 서부시찰장 이근행목사가 청원한 시찰 내 미래자립교회 재정청원의 건
- (4) 중부시찰장 김수구목사가 청원한 시찰 내 미래자립교회 재정청원의 건
- (5) 남부시찰장 이성일목사가 청원한 시찰 내 미래자립교회 재정청원의 건
- (6) 북부시찰장 송재홍목사가 청원한 시찰 내 미래자립교회 재정청원의 건

4) 본회 상정 안건

- (1) 총회 헌법 개정에 따른 노회규칙 개정안
- (2) (전)총회장 권오현목사가 요청한 노회 대사회관계위원회 조직의 건
- (3) 노회장 이영근목사(임원회)가 제출한 '노회장, 목사부노회장, 서기는 투표 없이 총대가 되게 하자'는 청원의 건
- (4) 지난(11회) 노회에서 '시행세칙 제4조 3항'에 대한 임원회에 일임한 수정안 보고의 건

‘본회에서 장로 증원 허락을 받고, 장로고시 합격보고를 별도로 받으므로

장로 피택보고 및 장립 보고는 시찰 상황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한다.’를
‘장로취임보고 및 장립 보고는 시찰 상황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한다’로 수정

유안건

- (1) 노회소속 목사들의 국민연금 가입의 건
- (2) 형편이 어려운 목사들의 은급금 지원의 건

7. 보고

1) 시찰회

- (1) 동부시찰
 - 시찰내 교회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 (2) 서부시찰
 - 시찰내 교회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 (3) 중부시찰
 - 은성교회 가을부흥회를 가짐, 9월 8일~10일(강사: 정근두목사)
- (4) 남부시찰
 - 광교장로교회 김동환, 정현성, 한재술씨의 장로 임직식(23.5.21)
- (5) 북부시찰
 - 군포시민교회 양동일씨의 장로 임직식(23.5.20)
 - 창대한교회 박순호씨의 장로 임직식(23.8.27)
 - 좋은시민교회 정연철, 황현대씨의 장로 임직식(23.9.10)
 - 들꽃교회 송재홍목사의 위임식, 장현록씨의 장로임직식, 김용림씨의 장로 취임식(23.9.17)

2) 상비부

(1) 선교부

- 러시아 선교지 방문 및 컨퍼런스
- 일정 : 2023년 8월 29일~9월 4일
- 참석자 : 이종문목사, 권석희장로, 러시아선교사 8가정

(2) 교육부

- 제6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일시 : 2023년 6월 17일
장소 : 신일교회당
- 제1회 경기중부노회 1일 영성캠프
일시 : 2023년 8월 26일
장소 : 안양일심교회
- 제 49회 전국교사대회 참석
일시 : 2023년 8월 14일~16일
장소 : 하이원리조트 마운틴콘도

(3) 신학부

- 목사 및 장로 고시
일시 : 2023년 8월 28일(월) 오전 9시
장소 : 큰숲 교회당 (시흥시 봉화로 321-1)
결과 :
 - ① 목사고시
노태수강도사 (필기고사 합격)
 - ② 장로고시 합격자
나연수, 윤건호(평촌우리교회)
정상천, 정충원(충훈교회)
전두수(갈뫼교회)
이경로(양문교회)
- 신학 계속 면접 합격자
 - 1학년 : 여우람(광교장로교회)
 - 2학년 : 박현호(시흥성문교회) 김대은(시흥성문교회)
 - 3학년 : 백승우(들꽃교회) 김항원(양문교회) 이요섭(안양신일교회)

8. 기타 보고

1) 임원회보고

지난 노회(12회)에서 임원회에 위임된 정군호 목사가 상정한 ‘바른 신앙’에 대한 질의건에 대해서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수 신 : 경기중부노회장
참 조 : 서기
제 목 : 바른신앙에 대한 질의 답변

성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 노회가 제12회 정기노회(2023년 4월 12일)에서 결의하여 본 위원회로 송부한(경중 제 12-7) “바른 신앙 질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집필 목록에서 ‘김성로 목사’ 건과 관련하여 삭제한 글에 대한 답변
 - 1) 삭제한 글: 부활교(김성로)에 대한 글(2019년 23호, 2020년 24호, 2022년 26호), 김성로 목사의 부활복음의 실체(정군호, 2017년 21호), 김성로 목사의 신학사상 비판(전 태, 2017년 21호)
 - 2) 답변: 편집상 단순 착오로 빠져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곧 발행 예정인 27호(2023년) 집필 목록부터 삽입될 것입니다.
2. 집필 목록에서 ‘인터콥’과 관련하여 삭제한 글에 대한 답변
 - 1) 삭제한 글: “인터콥과 최바울은 왜 재조명되어야 하는가?” (정군호, 2014년 18호)
 - 2) 답변: 25호(2021년)까지는 목록에 삽입되어 있었으나 26호(2022년) 목록에는 편집상 단순 착오로 삭제되었음을 확인하였는바 27호(2023년)부터는 삽입될 것입니다. 다만 위 해당 글은 제65회 총회가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가 제출한 인터콥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고 인터콥선교회가 제시한 조치들의 변화가 확실히 될 때까지 참여 금지를 가결”한 결정에 반하므로 총회 행정실에서 ‘총회의 결의와 반한 글’이라는 안내문을 실어 전국 교회에 배포한 일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총회 규정 단체 목록에서 삭제한 단체에 대한 답변
 - 1) 삭제한 단체: 제68회 총회(2018년)에서 ‘개혁주의에 부적절, 예의주시’로 규정한 “김성로 목사”(25호, 2021년)
 - 2) 답변: 26호(2022년)에는 삽입되었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끝.

총회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권준오 목사(직인생략)

시 행 총회이대위 72-13 시행일자/ 2023. 6. 15 접수일자/
담당자 서기 성희찬 목사 전화/010-6482-8030
주 소 (51386)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10번길 67-10 이메일/heuichan@daum.net

2) 총회 총대 보고

(1) 일정과 장소 :

- 일시 : 2023년 9월19일 오후2시-21(목) 오후6시
- 장소 : 고려신학대학원 강당

(2) 총대 (20명)

- 목사 : 김홍석 김성규 이영근 이근행 김동식 조원근 김수구
- 장로 : 박성열 허창범 박갑봉 김종철 김석희 김인수 윤운섭
- 특별 총대 : 목사(이준성) 장로(김창희 양철곤 이금하 이삼권 한영호)

(3) 선출

- 총회장 김홍석 목사
- KPM 이사 조원근 목사
- 농어촌위원회 서기 이영근 목사
- 행정법규부 서기 김동식 목사

(4) 중요결정사항

- 본 노회 최정기 목사가 고신언론사 사장 연임을 인준받다.
- 본 노회에서 상정한 ‘총회 70주년 기념교회 설립’ 명칭사용을 허락하다
- 총회선교부(KPM) 본부장 65세에서 68세로 정년연장하다.
- 한 주일 헌금 : 총회군선교(2월 넷째 주일), 농어촌교회(3월 둘째 주일), 이단경계(6월첫째 주일), 총회CE(8월 둘째 주일), 신대원(9월 마지막 주일), 전국학생신앙운동(10월 마지막 주일)

(5) 고신대학교 재정청원을 독려하기로 하다.

3) 회계감사 결과보고

경기중부노회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1) 개 요

- 일 시 : 2023. 9. 26(화) 14:00 ~ 17:00
- 장 소 : 생수교회당(조원근 목사 시무)
- 대 상 : 노회 회계, 주요 상비부(전도부, 선교부, 사회복지부 등)
예산 지원 기관(주교연합회, SFC 등), 각 시찰(예·결산)

(2) 감사 중점/관점

- 예산 편성의 적절성 (노회, 시찰, 상비부, 지원기관 등)
- 편성 예산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 과 투명성
(회계장부, 통장거래 내역,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기타)
- 과(부)족 예산에 대한 처리 내역 등

(3) 회계감사 결과

- 예·결산 현황

2023. 9. 26 현재 (단위: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255,409,695	247,895,000	8,414,695	

- 편성된 예산 대비, 실제 회기 초에 재정이 부족하여 집행이 지연되거나 다소 어렵게 운영됨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회계연도의 상이로 정기 지원금, 총회분담금 선납금 등)
- 노회 회계부와 상비부의 행정적/회계적 예산 집행 상태 양호함
- 노회 재정지원 기관과 각 시찰에 대한 예산집행은 잘 관리되고 있음
- 노회 상비부 중 소속 기관에 대한 적절한 업무와 예산사용 등에 관한 노회의 지도·감독이 필요함(남/여전도회, 주교연합회)
- 시찰을 제외한 노회 상비부 및 관련 기관은 예산 집행 후 잔액은 노회로 전액 반납하여야 하나, 반납하지 않고 별도 자체로 보관하고 있는 상비부와 기관이 일부 있음.

- 총회 특별총대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총대여비 증액 편성

(3) 연구검토 및 권고사항

- 노회 예산 편성 시 현실성 있는 예산(안) 수립
 - ※ 총회분담금 선납금, 정기지원기관/인원에 대한 간단없는 지원, 총회 특별총대 여비 추가 편성 등 초기 고정액 지출에 확실한 대비 마련
 - 한 회기 충분한 여유예산 확보관리 대책 필히 마련
- 현, 상비부 및 관련 기관의 잔액은 노회 회계로 전액 반납하고 잔액을 제로화 하는 예산집행 원칙 정립
- 전도부는 노회 남(여)전도회에 대하여, 교육부는 주교연합회에 대하여 일반 행정 및 회계 업무 지도 및 격려 실시 정례화
- 노회 회계통장 별도 발부 및 현행 사용방법 유지에 대한 검토 요망

(4) 총 평

- 전 노회 산하, 시찰, 상비부, 기관, 개 교회 등 절제되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노력의 모습으로 모범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 다소 미흡하고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확인하고 잘 살펴서 보다 발전되고 건강하고 견실한 회계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용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끝)

2023. 9. 26.

(감 사) 이 근 행 목사 (직인생략)
박 갑 봉 장로 (직인생략)

8. 2022-2023 결산

1. 수입부

수 입		
항 목	결 산(2.45%)	비 고
이월금	4,898,240	
동부시찰	92,000,000	
서부시찰	51,500,000	
중부시찰	22,300,000	
남부시찰	23,900,000	
북부시찰	61,700,000	
기타	11,455	
합계	256,309,695	

2. 지출부

지 출			
구 분	항 목	결 산	비 고
1. 상 회 비	총회분담금	81,894,000	총회/ 상비부, 위원회
	소 계	81,894,000	증액(3.208.000)
2. 총회활동비	노회대표활동비	5,665,000	총회행사, 운영위원회
	총회총대경비	7,680,000	총회납부금포함
	소 계	13,345,000	
3. 임 사 부	회 의 비	500,000	
	활 동 비	500,000	
	소 계	1,000,000	
4. 행정법규부	회 의 비	500,000	
	활 동 비	500,000	
	소 계	1,000,000	
5. 선 교 부	경기중부선교대회	3,000,000	
	한나선교회	2,400,000	임성용선교사 20만*12
	활 동 비	500,000	
	소 계	5,900,000	

6. 사회복지부	목사복지지원	6,500,000	
	생활지원비	1,200,000	지완훈목사 10만×12
	활 동 비	500,000	
	소 계	8,200,000	
7. 교 육 부	주일학교연합회	15,000,000	
	목회대학원	1,800,000	자립50%, 미자립100%
	부교역자교육비	0	
	활 동 비	500,000	
	소 계	17,300,000	
8. 신 학 부	교 육 비	1,000,000	목사,장로고시 후 교육
	활 동 비	500,000	
	소 계	1,500,000	
9. 전 도 부	미자립교회지원	59,500,000	육도교회 포함
	군목지원비	5,400,000	유모세목사 45만*12
	활 동 비	500,000	
	소 계	65,400,000	
10. 재 무 부	예.결산심의	330,000	
	활 동 비	500,000	
	소 계	830,000	
11. SFC 지도위원회	간사사역지원비	13,000,000	
	간사워크샷	1,000,000	
	겨울수련회	5,000,000	경기중부 SFC
	활 동 비	800,000	행정비포함
	소 계	19,800,000	
12. 은 퇴 관 리 위원회	활동비	1,000,000	
	소 계	1,000,000	
13. 임 원 회	노회장활동비	1,000,000	
	임원회활동비	3,243,300	
	서기/회계업무비	1,000,000	
	사무 행정비	2,870,000	
	전임원격려비	692,000	기념품 (2개)
	소 계	8,805,300	

14. 감사위원	활 동 비	500,000	
	소 계	500,000	
15. 공통지출	시찰활동지원	7,000,000	동부100, 서부100, 중부200, 남부200, 북부100
	정기노회개최비	2,571,000	2회
	일본서부중회방문	0	격년제
	고려여신원후원	1,000,000	
	진중세례참여경비	0	총회. 군선교위원회
	수도권체육대회	3,000,000	수도권 목사장로부부
	정보 통신비	1,300,000	노회홈페이지관리 외
	수도권신년하례	1,500,000	
	남.여전도회지원	1,000,000	남전도50. 여전도50.
	소 계	21,200,000	
16. 예 비 비	예 비 비	4,049,700	광고비. 임시노회.신대원후원. 등
	소 계	4,049,700	
합계 247,895,000			

전기 이월금	4,898,240		
수입금액	251,411,455	지출금액	247,895,000
		이 월 금	8,414,695
합 계	256,309,695	합 계	256,309,695

9. 임원회 결의사항 요약

1) 12-1차: 2023년 4월 21일(금) 오전 7시 일심비전교회당

* 가결안

- (1) 12회 노회회록 확정하다.
- (2) 노회 시행세칙 수정 제4조 3항, 피택보고에서 취임보고로 변경건은 개정하여 본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본회에서 장로 증원 허락을 받고, 장로고시 합격보고를 별도로 받으므로 장로피택보고 -> 장로취임보고 및 장립 보고는 시찰 상황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 (3) 이영준 강도사 (서울남부노회 서초동교회에서 말씀전원교회로)의 이명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 (4) 홍태화 목사 (울산노회 큰빛교회에서 신일교회로)의 이명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 (5) 노회에서 임원회에 일임한 정군호 목사가 상정한 '바른 신앙'에 대한 질의 건은 질의서를 이단대책위원회에 보내기로 하다.
- (6) 다음 회기 노회 장소는 동부시찰에서 결정되는 교회당으로 하기로 하다.
- (7) 선교대회에는 부노회장 김종철 장로가 임원대표로 참여키로 하다.
- (8) 허태수목사 (경남서부노회 거창교회에서 본 노회로)의 이명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2) 12-2차: 2023년 5월 4일(목) 오전 10시 온라인

* 가결안

- (1) 고진혁 강도사 (부산동부노회 남천교회에서 갈뫼교회로)의 이명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3) 12-3차: 2023년 6월 19일(월) 오후 5시 양촌리

* 가결안

- (1) 임시노회(8월 8일, 2시) 장소는 안양일심교회로 하고 후보자들 서류는 잘 검토하기로 하다.
- (2) 임시노회(총회 임원 추천 외) 안건
 - 시흥성문교회 당회장 이근행 목사가 청원한 장로 선택의 건은 안건으로

받기로 하다.

- 예수소망교회 당회장 우선동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폐쇄 허락의 건은 정기노회에서 다루기로 하다.
- (3) 이단 대책위 질의에 대한 답변의 건은 정기 노회에서 결과 보고하기로 하다.
- (4) 임시노회에서 신학부에서 고시 합격보고하기로 하다.

* 기타: 고소건은 대표로서 이근행목사 이영근목사 송재홍목사 3인에게 일임하고 변호인으로 김석률목사를 선임하기로 하다.

4) 12-4차: 2023년 7월 19일(월) 오전 7시 양촌리

* 가결안

- (1) 정기노회 일시 등 결정 건
 - 노회 장소: 동부시찰에 일임한 것을 시찰순서를 고려하여 북부시찰에 일임하기로 하다.
 - 노회 일시: 10월 9일(월) 19:00 ~ 10일(화) 17:00
 - 노회시 성찬식은 하지 않기로 하다.
 - 9일(월) 저녁 식사는 개인적으로하기로 하다.
 - 투표는 전자 투표로 하고 정성구 목사가 준비하도록 하다.
- (2) 임시노회 안건 추가의 건
 - 들꽃교회 임시당회장 김석률 목사가 청원한 목사 위임의 건은 모든 서류를 제출받고 임시노회 안건으로 받다.

5) 12-5차: 2023년 9월 22일(금) 오전 7시 일심비전교회당

* 가결안

- (1) 서기부에 접수된 시찰회와 상비부 상정안건은 노회에 회부하기로 하다
- (2) (전)총회장 권오헌목사가 요청한 대사회관계위원회 조직의 건은 노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 (3) 73회 총회장으로 당선된 김홍석목사 축하행사는 차기 목사 임원이 주관하기로 하다
- (4) 13회 노회 임원선거 방식은 전자투표로 한 것을 경비 등의 문제로 수기로하기로 하다

- (5) 임원회가 '노회장, 목사부노회장, 서기는 투표없이 총대가 되게 하자'는 안건을 노회에 상정안건으로 올리기로 하다.

10. 광고

1. 총회헌법이 수정되어 은퇴목사는 80세까지 투표권이 있습니다.
2. 목사. 장로 주소. 전화번호는 교단주소록을 참조하시고 수정된 주소록이 필요한 경우 서기에게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3. 주소. 전화번호 변경시 서기에게 알려 주십시오.
4. 상회비에 관하여(노회규칙 제30조 3항) 본회의 부담금은 10월 정기노회에 서 각 시찰회로 배정하고, 각 시찰회는 4월 정기회 개최 전까지 2분의 1 이상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노회 공지는 경기중부노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www.kskjin.com)
6. 목사의 시무지 이동시 은급가입증명서 첨부(만51세 미만)는 총회결의사항입니다.
7. 장로 임직식은 반드시 노회 임원,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식은 반드시 시찰위원 약간 명의 안수위원으로 참여해야 함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세칙 4조 5항).
8. 이름표는 나가실 때, 반납 바랍니다.

11. 상비부 및 각 시찰 모임 장소

※ 임원회 - 2층 새가족실

※ 상비부

- 1) 교육부 - 3층 본당 앞편(오르간쪽)
- 2) 사회복지부 - 3층 본당 뒤편(피아노있는 좌석 뒤편)
- 3) 선교부 - 2층 고등부실
- 4) 임사부 - 3층 초등2부실(본당 맞은 편)
- 5) 신학부 - 2층 새가족실
- 6) 재무부 - 2층 찬양대준비실
- 7) 전도부 - 3층 본당 성가대석
- 8) 행정법규부 - 2층 예배준비실
- 9) SFC 지도위원회 - 1층 로비
- 10) 목사은퇴관리위원회 - 지하 중등부실

※ 시찰회

- 1) 동부시찰 - 3층 초등2부실(본당 맞은 편)
- 2) 서부시찰 - 3층 본당 성가대석
- 3) 중부시찰 - 3층 본당 뒤편(피아노있는 좌석 뒤편)
- 4) 남부시찰 - 3층 본당 앞편(오르간쪽)
- 5) 북부시찰 - 4층 중층

12. 경기중부노회 규칙 개정안

교회헌법 개정에 따른 경기중부노회 규칙 개정안	헌법⇒교회헌법
제2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입각한 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교회정처 제140조). 제4조 회원의 자격 2. 위임목사, 전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선교사는 회원권이 있다. 4. 은퇴, 원로 목사는 연권과 투표권이 있으나 피선거권 및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교회정처 제43조4항),(삽입) 5. 총대 장로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한 후 호명하면 회원권이 있으며(교회정처 제130조4항), 유고시에 한해 임원회 결의를 거쳐 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6. 장로 총대 선정기준: 각 당회는 시무목사 수에 따라 장로 총대를 선정하거나 세례교인수에 따라(교회정처 제122조1~2항) 장로 총대를 파송하되,(삽입). 제7조 노회의 각종 명부: 교회정처 134조에 따른 각종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의 제8조 정기회 : 회장이 임원회를 거쳐 소집한다. 1. 일시: 10월 둘째 주일, 4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에 회집한다(단, 총회에서 일정의 일괄 변경 지시가 있을 때는 변경할 수 있다).	교회헌법-정치 제 136조 군종목사, 교수목사, 선교목사 정치 제126조2항 [은퇴한 목사는 80세까지 연권과 투표권이 있고 그 후에 연권만 있다.] 정치 제126조4항 정치 제118조1.2항 [부목사 청빙 등으로 변경요인이 있으면 4월 노회에서 장로 총대가 증원된다.] 정치 제120조 (전자문서도 가능)

2. 개회성수: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본 노회에 속한 시무처가 다른 목사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교회정처 제129조). 제9조 임시회 시무처가 다른 목사 2인과 장로 2인의 청원이 있을 때와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임원회를 거쳐서 회장이 소집하되 회집할 장소 및 시일과 안건을 7일 전에 목사와 총대 장로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의결한 후 폐회한다(교회정처 제128조2항).	각 5인 정치 제125조
제 5 장 총회 총대 제27조 총대 총회 총대는 4월 정기회에서 헌법에 의한 정수대로 회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 파송하되 총대 유고시를 대비하여 약간 명의 부총대를 득표의 순위대로 선정한다. 단, 한 당회에서 장로 2인을 초과할 수 없다(교회정처 제3장 제6조 1항).	정치 124조 2항
경기중부노회 시행세칙(행정규정) 제1조 회의 1. 본회 폐회 중 “담임목사 외의 사면 및 이명, 본회 회원의 본회 소속 교회 전임목사 사면 및 청빙, 당해 연도 목사고시 응시 예정인 강도사 이명은 임원회에 위임한다.” 2. 각 시찰회는 10월 정기회 시의 시무목사 및 총대 장로로 하고, 시찰위원은 당회장 및 각 당회에서 선정한 장로 1명씩으로 하며, 시찰 임원(시찰장, 서기, 회계)은 시찰위원이 호선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는다. 3. 본회에서 허락을 받은 협조 당회원의 선정(삽입), 당회장의 임면(任免), 위임국의 조직은 각 시찰에 위임한다. 단, 재위임을 할 수는 없다. 4. 은퇴목사 및 총회 자문위원 여비는 본회에서 부담한다. 5. 목사 회원의 호명순서는 위임 및 전임, 기관 및 전도목사, 종군 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기타목사, 준회원 목사로 구분하되 본회 정회원 된 순서로 한다.	

교회헌법
시행세칙-정치 제7조

목사 장로 각 2인

군종목사

제4조 임직 1. 임직자의 피택에 있어서는 장로는 총회 헌법에 의하고(교회정 칙 37조, 67조), 만65세(만66세 직전일)까지는 임직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단 본 규정은 취임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안수집사와 권사의 피택은 최대한 해 교회 당회의 자율성을 존 중하나 피 택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되 15일 이내의 미달은 시찰의 동의를 얻어 허락할 수 있다. 4. 당회 추천으로 장로를 선출할 경우 2배수 이상 공천이 원칙이 나 깨 교회 형편에 따라 당분간 1.5배수 공천을 할 수 있다.	정치 제65조, 67조 65세는 선거 당일 을 기준으로 한다. 5개월 1.5배수 이상을 공 천해야 한다.(정치 67조3항) [7. 장로고시 합격 후 1년 이내에 임 직식을 하여야 하 며, 연기하려면 노 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

13. 경기중부노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경기중부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한 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제정한다(교회정치 제140조).

제3조 관할구역

본회는 광명시,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소속 각 교회를 관할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회 소속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장로로 한다.
2. 위임목사, 전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선교사는 회원권이 있다.
3. 무임목사는 언권만 있는 회원이다.
4. 은퇴, 원로 목사는 언권과 투표권이 있으나 피선거권 및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교회정치 제43조4항).
5. 총대 장로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한 후 호명하면 회원권이 있으며(교회정치 제130조4항), 유고 시에 한해 임원회 결의를 거쳐 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6. 장로 총대 선정기준: 각 당회는 시무목사 수에 따라 장로 총대를 선정하거나 세례교인 수에 따라(교회정치 제122조1~2항) 장로 총대를 파송한다.

제5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서기가 시무하는 교회에 둔다.

제6조 노회의 직무

1. 당회, 개체 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소속기관 및 단체의 총찰.
2. 각 당회에서 제출한 건의, 청원, 문의(질의) 및 진정의 접수 처리.
3. 각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접수 처리.
4. 목사후보생의 고시, 교육, 이명 및 권징의 처리.
5. 목사의 자격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및 권징의 관리와 처리.
6. 강도사의 인허식 시행.
7. 개체 교회 장로의 선택, 임직 및 자격고시 관장.
8. 전도사의 자격고시 시행.
9. 각 당회의 당회록 및 미조직교회의 행정록의 검사와 그 합법여부 표시.
10. 교리와 권징에 관한 해석.
11.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위한 개체 교회 시찰.
12. 개체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 조직관장.
13. 개체 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 관장.
14. 개체 교회와 미조직교회의 전도사업의 지도권장과 교육 강화로 인한 영적 유익의 도모.
15. 개체 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재정 및 관리의 방침 지도.
16. 총회 제출의 청원, 건의, 문의, 전정,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처리.
17. 총회 제출의 노회 상황 보고.
18. 총회 총대 선출 및 총회 지시 실행.
19. 개체 교회와 산하 기관의 재산권 문제 처리.

제7조 노회의 각종 명부: 교회정치 134조에 따른 각종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회 의

제8조 정기회: 회장이 임원회를 거쳐 소집한다.

1. 일시: 10월 둘째 주일, 4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에 회집한다(단, 총회에서 일정의 일괄 변경 지시가 있을 때는 변경할 수 있다).

2. 개회성수: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본 노회에 속한 시무처가 다른 목사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교회정치 제129조).

제9조 임시회

시무처가 다른 목사 2인과 장로 2인의 청원이 있을 때와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임원회를 거쳐서 회장이 소집하되 회집할 장소 및 시일과 안건을 7일 전에 목사와 총대 장로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의결한 후 폐회한다(교회정치 제128조2항).

제10조 계속회

직전 노회에서 미결된 안건처리와 사건 처리상 편리한 장소 및 일자 변경 등으로 속회가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 결의를 거쳐 계속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장로 총대는 직전 노회의 총대로 한다.

제11조 비밀회

본회의 비밀회는 치리사건 처리상 필요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회집할 수 있다.

제12조 일반 안건

본회에 상정할 안건과 보고 건은 시찰을 경유하여, 개회 14일 전에 서면으로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긴급 안건

본회의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안건과 회기 중에 발생한 긴급 안건 등은 임원회의 허락을 얻어 긴급 안건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4조 임원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목사1인, 장로1인).

-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15조 감사: 목사와 장로 각 1인을 본회에서 선임한다.

제16조 임원 및 감사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 노회가 행하는 업무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목사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장로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3. 서기는 본회 각종 문부 및 서류와 인장을 관리 보관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돕고 서기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는 회의록을 기록 정리하여 서기에게 보고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돕고 회록서기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본회 결의에 따라 금전을 출납하고 장부를 정리하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감사를 받은 후, 10월 정기회에 수지 결산을 보고한다. 단 현금 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출납하되 회계의 현금보관 한도액은 임원회에 정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돕고 회계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감사는 본회와 각 상비부 회계업무 및 지원 기관을 감사한 후, 정기회에 보고한다(노회 산하 기관은 주무 상비부의 지도를 받은 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정

1. 본회 회장단은 10월 정기회에서 목사 부회장을 후보로 하여 투표로 선출 하되 과반수를 얻어야 하고, 부회장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2. 회장이 과반수를 얻지 못할 시는 부회장 선출과 동일하며, 부회장 투표시 2차까지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3차 투표는 다점자로 한다.
3. 기타 임원은 본회에서 선출하고 다점자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고, 기타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원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보선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제19조 임원회: 본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노회에서 맡긴 안건의 처리보고
2. 노회의 절차보고
3. 서기에게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여 본회 또는 소관 각부에 회부
4. 임시회 소집 및 노회 회기 중에 생긴 긴급한 사항의 처리보고

제4장 상비부 및 위원회

제20조 상비부서 및 임무: 본회의 회무를 유효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상비부를 두어 소관 사무의 집행 및 위촉된 안건을 심의 보고하고 각 부의 회의록과 회계장부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부원은 각 부 20명 내외로 한다.

1. 인사부: 목사의 인사 및 목사와 관련된 제반 사무를 심리하여 보고한다. 부원은 안수 후 15년 이상인 목사로 한다.
2. 행정·법규부: 장로에 관한 일과 강도사, 목사후보생, 전도사에 관한 인사 행정사무와 교회 행정 사무를 관할한다. 본회의 규칙을 수정, 해석하고 또 당회록과 행정록을 검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3. 선교부: 총회세계선교회(KPM)와 협력하여 국외선교 사업을 연구계획, 계몽 관리한다.
4. 사회복지부: 구제사업, 교역자 은급, 순교자 유가족 및 사회사업 후생, 기관, 교인들의 사회생활 지도를 맡아 지도한다.
5. 교육부: 교회 교육 일체를 주관하며 본 노회 산하의 교육기관(청장년연합회, 주일학교연합회)을 지도한다.
6. 신학부: 신학 문제, 신학생에 관한 일, 및 각종 고시(목사, 장로, 전도사)를 관장하며, 이를 심리하여 보고하되 부원은 안수 후 15년이 경과한 목

사로 구성한다.

7. 전도부: 본회 산하 전도 기관을 지도 감독하며, 전도사업(병원, 교도소, 경찰군인 등)을 연구 계획, 계몽 관리를 담당한다.
8. 재무부: 예산 편성안과 결산서를 본회에 보고하며, 목사 3인 장로 6인으로 조직한다. 단 편성된 예산에 준한 지출은 임원회 결의로 집행한다.

제21조 특별부와 임무: 전문성을 가진 약간 명으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S.F.C.지도위원회: S.F.C. 지도와 학원전도에 관한 일을 관리하는 일과 소속 간사를 지도 감독한다.
2. 목사은퇴관리위원회: 목사의 은퇴로 인한 은퇴목사의 노후대책에 대한 불안과 교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또한 은퇴목사와 교회 간의 원만한 협의가 요구될 때 이 일을 맡아 진행한다.

제22조 각부 및 위원회 임원: 각부 및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과 임무를 정하여 소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1. 부장(위원장): 필요시 부회(임원회)를 소집하며 이를 사회한다.
2. 서기: 부(위원회)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10월 정기회에서 행정법규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회계: 부(위원회)소관 예산을 출납하며 10월 정기회 전까지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정기위원

1. 공천위원회: 회장, 부회장, 서기 및 각 시찰장으로 구성하여 각부 위원은 노회 개회 전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10월 정기회에서 확정하되 공천시 유의사항은 아래 내용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 1) 각 상비부원은 3년 조로 나누어 매년 3년 조만 선정한다.
 - 2) 상비부원은 1인 1부를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2개 부서까지는 겸임할 수 있다.
2. 광고위원: 회장의 지명으로 선임하되 노회 기간 중 광고의 책임을 맡는다.
3. 안내위원: 회장의 지명으로 선임하되 노회 기간 중 안내 질서 및 회원의 출결 사항을 살핀다.

제24조 시찰회 : 개체 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 구역 단위로 다음과 같은 시찰을 둔다.

1. 구역: 본회는 5개 시찰을 둔다.
 - 1) 동부시찰: 광명시, 과천시,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 2) 서부시찰: 시흥시
 - 3) 중부시찰: 안산시
 - 4) 남부시찰: 수원시
 - 5) 북부시찰: 군포시, 안양시 만안구
2. 구성: 각 시찰회별로 10월 정기회에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조직한다. 단 시찰위원은 당회장과 각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 1인씩으로 구성한다.
3. 임무: 시찰에서는 소속 교회를 시찰하고, 노회에 상정될 안건 및 서류를 심사하여 경유한다.

제25조 특별위원

본회가 필요시 7인을 수습위원 혹은 전권위원, 기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한 당회에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공천위원회에서 배수로 공천하여 투표로 선정한다.

제26조 소속기관

- 1) 주일학교연합회
 - 2) 학생신앙운동(SFC)
 - 3) 청장년연합회(CE)
 - 4) 남전도회연합회
 - 5) 여전도회연합회
1. 소속기관은 노회의 감독 및 지도를 받아야 하며, 회장은 당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주무 상비부를 통해 임원조직, 사업, 예결산 등을 상비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매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4. 소속기관 및 기관이 본회의 감독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할 때는 그 대표에게 권고하고, 그 권고도 듣지 않으면 그 기관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법적 조치와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총대

제27조 총대

총회 총대는 4월 정기회에서 헌법에 의한 정수대로 회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 파송하되 총대 유고시를 대비하여 약간 명의 부총대를 득표의 순위대로 선정한다. 단 한 당회에서 장로 2인을 초과할 수 없다(교회정치 제3장 6조1항).

제28조 총대모임

총대모임에서는 총회와 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에 필요한 대책 및 총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의 소집으로 회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다음 노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회 계

제29조 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가을 노회 회집 익일부터 익년 10월 정기회 회집 당일 까지로 한다.
2. 본회 경상비는 상회부담금 및 기타 연보를 노회 재산 수입으로 총당하며 재무부는 예산안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10월 정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부담금

1. 각 개체 교회의 부담금은 전년도 결산액(주일 및 주정헌금, 일반감사헌금, 십일조헌금)에 의하여 배정하되 그 비율은 정기노회에서 결정한다.
2. 본회 부담금의 교회별 상하한 금액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본회의 부담금은 10월 정기노회에서 각 시찰회로 배정하고, 각 시찰회는 4월 정기회 개회 전까지 2분의 1이상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10월 정기회까지 완납치 않을 경우에는 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 회원여비

본회 정기회 참석회원의 여비는 시무교회가 부담하고, 임시회 소요 경비 및 여

비는 청원 교회의 부담으로 하되 총회의 지시에 의한 소집 및 특별한 경우는 임원회 결의를 거쳐 여비를 지급치 않을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1조(규칙개정):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고신총회 헌법(교회정치, 권징조례 등)에 위배되는 규칙은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없다.

제2조(시행일): 본 규칙은 회장이 공포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17년 10월 17일 제정

2018.4.10., 2019.10.15., 2020.5.4., 2021.4.13. 개정.

14. 시행세칙(행정규정)

제1조 회의

1. 본회 폐회 중 “담임목사 외의 사면 및 이명, 본회 회원의 본회 소속 교회 전임목사 사면 및 청빙, 당해 연도 목사고시 응시 예정인 강도사 이명은 임원회에 위임한다.”
2. 각 시찰회는 10월 정기회 시의 시무목사 및 총대 장로로 하고, 시찰위원은 당회장 및 각 당회에서 선정한 장로 1명씩으로 하며, 시찰 임원(시찰장, 서기, 회계)은 시찰위원이 호선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는다.
3. 본회에서 허락을 받은 협조 당회원의 선정, 당회장의 임면(任免), 위임국의 조직은 각 시찰에 위임한다. 단, 재위임을 할 수는 없다.
4. 은퇴목사 및 총회 자문위원 여비는 본회에서 부담한다.
5. 목사 회원의 호명순서는 위임 및 전임, 기관 및 전도목사, 종군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기타목사, 준회원 목사로 구분하되 본회 정회원 된 순서로 한다.
6. 장로 총대의 호명순서는 각 시찰별로 구분하여, 교회명 가나다순으로 해당회에서 보고한 장립 순서로 한다.
7. 본 규칙과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 기관 등의 회의 규칙”과 “각 치리회 보통 규칙(J.A.Hodge. 「교회정치문답조례」(배광식 외 공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2011., 490-97.”에 따른다.

제2조 행정

1. 총회 표준문서는 총회 홈페이지와 본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한다(kosin.org/board_MBKc61/1406529).
2. 본회 제출 서류는 아래의 총회 표준 문서지침을 준용하되 서식에 없는 서류는 본회 서기가 인정하는 서류로 한다.

A-1 : 교회설립 청원(목사)

A-2 : 교회설립 청원(기관)

A-3 : 교회분립(합병) 청원

- A-4 : 교회명칭 변경 청원
- A-5 : 교회주소 변경 청원
- A-6 : 교회개척 청원
- B-1 : 목사청빙 청원
- B-2 : 목사청빙 조회
- B-3 : 목사이명 청원
- B-4 : 편목위탁교육 청원(목사위탁교육 청원)
- B-5 : 목사고시 추천 및 청원
- B-6 : 전도사고시 추천 및 청원
- B-7 : 강도사 목사후보생 전도사 이명청원
- B-8 : 목사사임 청원

- C-1 : 다른 교단 목사가입 청원
- C-2 : 다른 교단 교회가입 청원
- C-3 : 장로 (선택, 증원) 청원
- C-4 : 장로 지명선택 청원
- C-5 : 장로고시 추천 및 청원
- C-6 : 장로고시 연기청원
- C-7 : 장로안수 연기청원
- C-8 : 신학입학 추천 및 청원
- C-9 : 신학계속수학 청원
- C-10 : 전도목사 파송 청원

- 보고-1 : 당회조직 보고
- 보고-2 : 총대파송 보고
- 보고-3 : 장로선택 보고
- 보고-4 : 장로 지명선택 보고
- 보고-5 : 장로임직(취임) 보고
- 보고-6 : 원로목사 추대 보고(원로목사 추대 청원)

- 이명-1 : 이명증 송부
- 이명-2 : 이명증접수 회보

증명-1 : 재직 증명서(목사 임직 증명서)

증명-2 : 노회소속 증명서

증명-3 : 은퇴 증명서

증명-4 : 노회선교사 파송 증명서

증명-5 : 당회소속 증명서

증명-6 : 교인 증명서

증명-7 : 교회 직인 증명서(총회)

증명-8 : 대표자 증명서(총회)

증명-9 : 소속증명서(총회)

증명-10 : 목회 경력 증명서(총회)

제3조 공천

1. 상비부는 1인 1부 공천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2부서까지 가능하며 특별위원은 중복할 수 있다.
2. 각 상비부의 1년조를 다음 부서의 3년조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천위원회의 임의조정은 최소화하고, 각 상비부의 순환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①임사부→ ②행정법규부→ ③선교부→ ④사회복지부→ ⑤교육부→ ⑥신학부→⑦전도부→ (⑧재무부)→ ①임사부 순으로 공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임사부는 노회 서기 또는 회장 역임자로 한다.
5. 신규 배정시, 동일부서 동일 년조에 전임 노회장 2명을 동시에 공천하지 않는다.
6. 기소위원은 재판부원과 동일한 당회에 소속된 자를 공천할 수 없으며, 목사 임직 15년 이상, 장로 임직 10년 이상인 자로 공천해야 한다.
7. 총회 또는 노회 파송 선교사 및 군목은 가급적 전도부 또는 선교부에 공천한다.
8. 장로 총대가 교체되었을 경우 이미 해 교회에 배정된 각 상비부에서 상호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상비부장은 가급적 1년조에서 선임하고, 서기는 2년조가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각 상비부장 및 서기는 담임목사로 한다.

제4조 임직과 고시

1. 임직자의 피택에 있어서는 장로는 총회 헌법에 의하고(교회정치 37조, 67조), 만65세(만66세 직전일)까지는 임직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단 본 규정은 취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안수집사와 권사의 피택은 최대한 해 교회 당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나 피택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되 15일 이내의 미달은 시찰의 동의를 얻어 허락할 수 있다.
3. 본회에서 장로 증원 허락을 받고, 장로고시 합격보고를 별도로 받으므로 장로 피택보고 및 장립 보고는 시찰 상황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4. 당회 추천으로 장로를 선출할 경우 2배수 이상 공천이 원칙이나 개교회 형편에 따라 당분간 1.5배수 공천을 할 수 있다.
5. 장로 임직식은 반드시 노회 임원,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식은 반드시 시찰위원 약간 명의 안수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6. 장로고시 추천은 장로고시 1개월 전까지 본회 서기에게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고, 서기는 이를 고시일 15일 전에 신학부 서기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7. 타 교회에서 이명증을 가지고 온 장로의 고시
 - 1) 본 교단의 타 교회에서 이명 온 장로는 필기고사는 면제하고, 면접을 실시한다.
 - 2) 타 교단에서 이명 온 장로는 전 과목을 응시하도록 한다(단, 고신신학원, 성경통신대학, 교사통신대학을 수료한 자는 면접만 실시한다).
8. 이명증 없이 타 교회에서 이명 온 장로의 고시
 - 1) 장로고시를 청원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임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② 교회를 옮긴 경위서
 - ③ 당회 의견서
9. 이명증이 있더라도 가까운 지역의 교회에서 이명 왔을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교회를 옮긴 경위서
 - ② 당회 의견서

제5조 연합

1. 본회는 지역 및 개혁주의 신학기관과 연합을 추진하되 반드시 본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며, 임원회 결의로 임시 참여할 수는 있다.
2. 본회 소속 기관의 회장은 사전에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총회 기관이나 총회 관련 단체에서 임원 등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노회에 추천을 청원할 경우 당회에서 결의한 후 시찰을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4. 본회 추천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3분 발언 후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되,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추천한다.
5. 임원 등의 추천이 아닌 강사, 직원 채용 등 단순한 소속을 증명하는 정도의 추천은 노회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은퇴

1. 전임목사의 은퇴청원서가 시찰을 경유하여 본회 서기에게 접수되면, 노회는 신속하게 당회장을 파송하되 타 시찰에서 임명도 가능하다.
2. 전임목사는 본인 재임 중에 후임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3. 전임목사가 사면/은퇴청원서를 제출하면 당회장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위임목사의 정년 은퇴가 1년 이내인 경우 은퇴 또는 사임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위임목사의 허락을 받아 후임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단, 현 당회장이 사퇴하여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를 할 수는 없다.
5. 후임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당회, 공동의회는 해 당회에서 노회원 중에서 임시당회장을 청할 수 있다(해 교회 부목사가 맡을 수는 없다).
6. 담임목사가 은퇴할 경우에는 제반 형편을 살펴서 해 교회에서 응분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인사부를 경유하여야 한다.
7. 담임목사가 은퇴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목사은퇴관리위원회(9인)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은퇴를 진행한다.
 - ① 교회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
 - ② 교회를 병합하고자 할 경우
 - ③ 교회부동산이 목사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또는 담임목사의 재산과 교회의 재산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 ④ 교회에서 적절한 예우가 어려워 후임자에게 은퇴금을 받으려고 할 경우
- ⑤ 교회가 본 위원회에 일임하기를 원할 경우

제7조 본 시행세칙은 임원회에서 개정하여 본회에 보고한 후에 회장이 공포하여 시행한다.

15. 별첨1

담임목사 명부

(①전입, ②기수, ③장립, ④생년월일 순서)

번호	이름	기수	장립	생년월일	전화(010)	교회	■조직교회 ●전노회장
1	정권준	40	88.04	55.10.15	9866-1829	늘빛	●
2	김홍석	41	91.04	60.10.21	9567-6616	안양일심	■ ●
3	이영근	42	91.04	58.10.02	9785-8564	일심비전	■
4	전종철	43	89.10	58.04.24	5330-6020	양문	■ ●
5	김성규	43	91.10	59.01.25	3865-7767	수원시민	■ ●
6	박성덕	43	91.04	59.11.01	6658-6779	우리	
7	김동식	44	90.10	56.01.16	8867-7009	충훈	■ ●
8	조원근	44	91.10	59.01.21	5206-1056	생수	■ ●
9	정군호	44	93.04	57.02.24	3543-7068	새빛	●
10	박승하	44	95.04	59.03.02	5476-1009	드림	
11	이준성	45	92.10	55.11.02	8941-8181	큰숲	■ ●
12	김실구	45	92.10	63.10.19	5299-5338	성광	■ ●
13	박흥대	45	93.10	53.04.12	2540-3829	영신	
14	이동준	45	93.10	61.05.19	4753-2952	하은	■ ●
15	강대수	45	93.04	56.02.29	4555-2486	성현	
16	김수구	46	93.10	59.11.05	8765-4710	천산	■ ●
17	박충성	46	93.10	64.08.01	4808-9182	영천	
18	김광섭	46	94.10	61.04.20	5515-0675	수원은혜	
19	한금석	46	95.04	60.07.30	7740-3927	수원믿음의	■ ●
20	이성열	46	96.10	59.07.23	4753-3001	만나	
21	장정복	47	94.10	60.01.30	3056-3551	늘푸른	
22	이근행	47	94.10	61.07.28	3336-3478	시흥성문	■ ●
23	김석률	47	96.04	65.08.10	9340-9211	창대한	■
24	김의겸	48	97.10	62.03.07	4108-5591	아름다운	
25	방석진	50	97.10	68.04.01	7280-2876	말씀전원	■ ●
26	송재홍	50	98.04	66.01.21	8616-0656	들꽃	■
27	신동섭	51	00.04	67.01.23	8567-9179	광천	■ ●
28	김성은	51	00.04	68.08.15	9839-0039	군포시민	■
29	이성일	51	00.04	69.04.08	5117-0249	새수원제일	■
30	임재호	53	01.04	70.07.17	2031-6656	옥길	■

번호	이름	기수	장립	생년월일	전화(010)	교회	■조직교회 ●전노회장
31	임은택	53	02.04	68.10.26	5470-4018	군포성안	■
32	강태원	55	04.04	69.02.22	4540-2490	넉넉한	
33	정성구	56	04.10	70.09.22	6337-9651	석천	■
34	김생중	56	04.10	71.01.09	4445-7840	온천하	
35	김세용	57	06.04	70.09.21	9567-3319	좋은시민	■
36	진경신	57	06.04	72.05.16	5517-7098	은혜신일	■
37	최경훈	58	07.04	72.10.15	2502-8172	신안	
38	이수영	58	07.04	73.08.01	4873-0328	늘사랑	
39	임경호	59	05.10	58.12.26	8267-9191	해오름	
40	정철기	59	08.04	72.02.08	7570-3944	광명일심	
41	정성훈	59	08.04	75.04.11	3102-3817	솔빛	■
42	최경선	62	10.10	75.03.13	9651-1588	가온빛	■
43	이종문	63	10.04	62.07.10	5308-7077	평촌우리	
44	박성산	63	10.10	65.10.14	9652-6578	행복한	
45	최민호	63	12.04	78.07.19	7771-8216	새언약	
46	송태성	64	13.04	71.11.18	5636-0354	예뵐	
47	김정남	64	11.09	81.05.29	9538-5290	은혜의	
48	안영기	64	12.09	75.07.22	3938-4057	기쁨의	
49	한성훈	64	12.04	76.11.18	4856-5510	살림	
50	정중현	69	17.04	85.03.24	9319-1148	광교장로	■
51	이명진	69	16.10	78.06.22	3938-0020	수원사명	
52	김영규	68	07.06	65.01.20	8235-9789	신명	
53	우선동	51	98.10	66.09.11	6641-9535	천성	■
54	신주실	59	08.04	74.12.29	8593-6631	신일	■
55	이성구	60	09.04	76.09.03	5546-7496	한마음	■
56	김경수	65	13.04	80.08.16	2567-2950	갈뵐	■
57	이영범	60	09.04	76.03.08	6231-7520	꿈꾸는	
58	유대식	66	14.10	79.10.25	8531-5551	은성	■
59						예수소망	
60						육도	

16. 별첨2 은퇴(원로)목사 주소록

- 최병학(8291-0684)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27-3 동산빌라 가-104
- 정강화(8259-5867) - 평택시 진위면 견산1길 11 LG 그린빌 2동 401호
- 윤우영(5601-2147) -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176 현대힐스테이트 124-302
- 오순동(2954-6384) - 안산시 상록구 팔곡마을아파트 103동 203호
- 임인혁(3900-9890) -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27, 613동 602호
- 김상수(5277-9222) - 군포시 수리동 삼환계룡A 835동 501호
- 이광현(6623-7715) -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34 청담그랑루테 B동 402호
- 이상기(4398-3317) -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남1로 100 그린빌A 1001-504
- 김정삼(8712-7777) - 광명시 양지로 16 일직동, 광명역 써밋플레이스
102-903
- 박승용(5240-9969) -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2길 25
- 김용출 - 캐나다
- 강연형(9593-3212) - 군포시 산본동1120 주몽아파트 1017동 206호
- 강호산(9177-5291) - 평택시 원칠원로56 동광A 104동 1202호
- 박성영(9049-2491)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상촌길 61-18 101호
- 천재석(3366-0690) - 강릉시 임영로 198번길 26-10
- 윤광중(4830-0691) - 군포시 용호1로 57 용호마을 쌍용스윗닷홈 202-601
- 정진철(5245-6723) - 수원시 영통구법조로25 에스케이뷰레이크타워
B동 3503호
- 추경호(9957-3754) -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102 동신아파트 101-803

임 원

노 회 장	이영근 목사	일심비전교회	010-9785-8564
부노회장	김석률 목사	창대한교회	010-9340-9211
	김종철 장로	신일교회	010-9788-3006
서 기	김성은 목사	군포시민교회	010-9839-0039
부 서 기	임은택 목사	군포성안교회	010-5470-4018
회록서기	임재호 목사	옥길교회	010-2031-6656
부회록서기	정성구 목사	석천교회	010-6337-9651
회 계	김석희 장로	생수교회	010-3304-2929
부 회 계	임학모 장로	안양일심교회	010-5269-6269
감 사	이근행 목사	시흥성문교회	010-3336-3478
	박갑봉 장로	수원시민교회	010-4525-1608

제13회 경기중부노회 보고서

발 행	노회장 이영근 목사
편 집	서 기 김성은 목사
발 행 일	2023년 10월 9일